

수원대학교 총학생회 재정운용세칙

□ 제정 : 2018. 09. 0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총학생회 세칙 제9장 재정에 따라 재정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깨끗한 재정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회의 재정은 총학생회의 운영 목적 달성과 회원¹의 이익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제3조(대표자의 책임)

회계에 관한 모든 책임은 학생회장에게 있으며 회계에 관한 실무는 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총학생회의 집행기구, 산하기구, 단과대 학생회, 과 학생회 등의 재정 운영에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단, 총학생회 재정 운용 세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조항의 경우 단과대 혹은 학과 재정 운용 세칙을 따른다.)

제2장 재정 운용의 원칙

제5조(재정 운용의 논의)

매년 신입생 등록기간 전에 확대운영위원회를 최소 1회 개최하여 이는 임기 시작 후 14일 이내 반드시 1회 이상 개최되어야 한다. 재정운용(예·결산안 작성, 학생회비 징수, 올바른 집행방법 및 내역 공개)에 관련하여 교육 및 논의한다.

제6조(예산·결산의 원칙)

¹ 회원 : 학생회비를 낸 학생을 의미한다.

- ① 학생회비²를 사용하는 모든 기구는 예산안·결산 및 매월 학생회비 운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 ② 학생회비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 회의 산하기구 등 총학생회에서 특정한 위상을 가진 단체의 예산안·결산 및 매월 학생회비 운용내역은 공개되어야 한다. 예산안·결산을 공개해야 하는 기구·단체는 이 세칙을 따른다.
- ③ 예산안·결산 및 매월 학생회비 운용내역은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빙을 통해서 한다.
- ④ 예산안·결산 및 매월 학생회비 운용내역의 작성은 재정 활동의 내용과 그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충실하고 간단·명료해야 하며 작성 양식은 당해 연도 총학생회의 사무국 양식에 맞추어 통일되게 작성한다.

제7조 (학생회비 배분의 원칙)

재정 부족으로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기구, 재정 운영을 학생회비에 의존하고 있는 기구를 고려하여 각 기구가 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학생회비가 배분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학생회비 집행의 원칙)

- ① 학생회비는 이 회 각 기구의 운영, 사업, 홍보 등에 사용한다.
- ② 학생회비의 집행은 각 기구에 소속된 위원의 편익³을 위해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단, 업무 등을 위해 필요한 지출이라고 인정될 때는 단과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일부 또는 전부를 집행할 수 있다.
- ③ 학생회비의 집행은 효율적인 사용을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 ④ 학생회비의 집행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만약 운영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이는 전액 회원들을 위하여 집행되어야 한다.
- ⑤ 학생회비를 집행할 시 카드 사용을 우선으로 하고 현금을 사용할 시 반드시 계좌이체를 해야 한다.(단, 계좌이체의 경우 이체확인증과 간이영수증을 보관 및 공개한다.
현금인출은 불가능 하다.)
- ⑥ 학생회비로 교통수단을 이용할 시, 이에 따른 합리적인 공동사유서를 감사위원회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유서에 대한 이유 불충분으로 거절될 시, 해당 지출에 대한 금액을 반환조치 해야 한다.
- ⑦ 임기가 끝났을 시 여분의 학생회비가 있다면 당해 연도 학생회비 제출 인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² 학생회비 : 총학생회비와 과 학생회비를 포함한다.

³ 행사 당일 이외에 학생회비가 학생회 구성원만을 위해 운용되는 경우를 뜻한다. 그러나 행사 당일 학생회 구성원을 위한 숙식 제공은 가능하다. 다만 행사가 6시간이상 진행될 경우에는 식대만 해당하며, 잠자리 제공은 24시간 이상 진행 될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9조 (학생회비 공개의 원칙)

- ① 학생회비를 사용하는 모든 단위는 매월 첫째 주 금요일까지 전월 사용 명세를 공개하여야 한다.(첫째 주 기준은 한 달의 날짜 1일이 목요일 이전부터 시작하면 첫째 주, 금요일부터 시작하면 해당 날짜에서 다음 주를 첫째 주로 정의한다) 또한, 그와 관련된 증빙자료⁴를 반드시 첨부한다. (웹페이지 및 SNS 등 해당 단위가 주로 사용하는 온라인 소통 창구를 통해 게시한다.)
- ② 매월 정해진 기한 내에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을 시 1차 경고 후 72시간 이내에 시정되지 않을 경우 해당 학생회는 사유서를 공개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제10조 (회계연도)

이 회의 회계연도는 총학생회 회칙 제52조(회계연도)에 따라 1기, 2기로 구분한다.

제11조 (서류 보존)

- ① 회계에 관한 장부 및 서류는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② ①의 기간 경과 후 장부 및 서류를 폐기할 때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감사)

- ① 감사는 모든 단위의 학생회의 회계에 대하여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시행하며 감사 결과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모든 단위의 회계 책임자는 중앙운영위원회 혹은 감사위원회의 회계자료 요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③ 감사는 회계연도마다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중앙운영위원회 및 감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다.
- ④ 회계의 감사에서 회칙 및 세칙에 위반, 회비의 횡령 등 부정행위가 발견될 경우 감사위원회 및 중앙운영위원회는 즉시 회계 책임자를 호출하여 추가 심의를 하며 부정행위로 사용한 금액일시 해당 금액은 다시 학생회비로 반환과 함께, 해당 학생회는 사유서를 공개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또한 관련자 및 대표자는 징계에 처하며, 총학생회 회칙 제3장 제22조에 의거, 탄핵 사유로 적용 가능하다. 추가적인 조정이 필요한 경우 총학생회 회칙 제52조(회비) 제4항에 따라 재심의 및 조정을 한다.

제3장 회계

제13조 (예산안의 편성)

- ① 예산안은 각 항목의 성질별로 관·항·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② 항목별로 전년도 결산과 비교하여 증감된 비율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③ 각 기구의 예산안은 쉽게 분석할 수 있도록 통일된 작성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⁴ 증빙자료 : 품목이 나와 있는 영수증을 원칙으로 함. 계좌이체의 경우 거래내역서를 같이 첨부한다.

작성 양식은 당해 연도 총학생회의 사무국 양식에 맞추어 작성한다.

- ④ 각 기구의 예산안은 임기 시작 후 14일 내에 시행되는 확대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 후 의결되어야 한다.

제14조 (결산의 작성)

- ① 결산은 각 항목의 성질별로 관·항·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② 항목별로 확대운영위원회에 제출했던 예산안과 비교하여 증감된 비율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③ 각 기구의 결산에는 항목별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특히 수입에 관하여서는 입금된 통장의 사본, 계약서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④ 각 기구의 결산은 쉽게 분석할 수 있도록 통일된 작성 양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작성양식은 당해 연도 총학생회의 사무국 양식에 맞추어 작성한다.
- ⑤ 각 단위 회계결산 공개는 수원대학교 총학생회 회칙 제51조 회계연도를 따라 2회 공개를 의무사항으로 한다.

제4장 학생회비

제15조 (총학생회비 책정)

- ① 학생회비는 확대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매 학기 고지한다.
- ②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정한 금액은 명문화한다.
- ③ 학생회비 변동이 생길 경우 변동 사유를 확대운영위원회 의결 결과와 함께 학생들에게 공지한다.

제16조 (과 학생회비)

- ① 과 학생회비는 각 과 학생회에서 소속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1회 고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과 학생회비의 책정은 각 과 학생회에서 책정하며 예산안 제출과 이를 통한 확대운영위원회에서의 인준을 통해 의결된다.
- ③ 과 학생회는 과 학생회비가 새로 책정되면 지체 없이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과 학생회비를 고지할 경우 고지와 함께 해당 학생회비 산정근거에 대한 안내문을 제공해야 한다.
- ⑤ 과 학생회비는 자율 경비임을 알리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제 17조 (학생회비 환불)

- ① 학생회비를 납부한 학우에 한해 환불을 요구할 시, 해당 학생회는 반드시 학생회비 일부 및 전액을 환불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단, 과 학생회일 경우 과학생회 세칙에 따라 환불절차를 밟는다. 세칙 부재 시, 총학생회 세칙을 따른다.
- ① 총학생회비 환불을 요구할 시, 매 학기 예결산안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이 진행되는 전체학생총회 및 확대운영위원회 회의가 종료된 다음날인 시점부터 7일째인 총학생회 업무종료시간까지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다. 그 이후부터는 총학생회비 일부 및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없다.

부 칙

(시행일) 본 회칙은 공포한 날(2018.09.05)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